



# '23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연장

## Q&A

2023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관련 종사자의 교육기간이 2024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# 공통

**Q1**

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기간 연장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▶ 축산업 협회 및 가축사육업·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중 '23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됩니다.

※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·운전자는 교육연장 대상이 아님을 유의

**Q2**

연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
- ▶ '24년 2월 29일(목)까지입니다.

**Q3**

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
- ▶ 온라인·집합교육 중 택1을 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.
  -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: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([www.farmedu.kr](http://www.farmedu.kr)) 접속·수강
  - 집합교육 이수방법 : 인근 교육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 참여

※ 교육운영기관 확인(Click!) ☞ [www.farmedu.kr/home/intro/eduOperGuideView2](http://www.farmedu.kr/home/intro/eduOperGuideView2)

(교육정보시스템([www.farmedu.kr](http://www.farmedu.kr)) > 교육소개 > 교육운영기관 > 교육운영기관 안내)

※ 축산관련종사자 학습상담 지원센터 : ☎ 1833-4265

**Q4****'23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?**

- ▶ '24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단,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.
- ※ 미이수자 과태료 : (허가) 100만원, 200, 400, (등록) 50, 100, 200, (차량) 100, 200, 500
- ※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

**Q5****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▶ 허가·등록 농장이 다수인 경우 : 대표자가 1회 교육 이수
  - \* 축종 및 허가·등록에 관계없이 1회 교육을 받으면 되나, 허가와 등록을 함께 받은 자는 허가자 교육을 받아야 함
- ▶ 휴업자 : 허가·등록시스템(세울 행정전산망)에 휴업으로 신고된 경우 휴업기간 동안은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.(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 교육 면제)

**교육운영기관****Q6****(교육대상) 미이수자 상세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?**

- ▶ 확인방법1) 관리자 교육정보시스템 > 교육지원 관리 > 관리자 공지사항
  - ※ 명단은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
  - ※ 관리자 교육정보시스템(Click!) [www.farmedu.kr/adk](http://www.farmedu.kr/adk)
- ▶ 확인방법2) 관리자 교육정보시스템 > 회원 관리 > 학습자 회원 > 보수교육 대상 조회(일별) > 연장조회 > 보수교육 종료일(2023-12-31) 입력, 영업상태 정상 > 검색

**보수교육 대상 조회(일별)**

기준일 조회	종료일 조회	연장 조회
보수교육 종료일 2023-12-31	~	2023-12-31
연장 종료일	~	
인허가번호 Input Keyword		이름 Input Keyword
지역(지자체) 시,도	시,군,구	시,군,구
지역(학습자) 시,도	시,군,구	시,군,구
업종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축사육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충축업/부화업/경액등처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축거래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축산차량종사자		
인허가 유형 전체 등록 허가	영업상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멸소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처분	
상태 전체 미신청 신청(미수료) 수료	연장수료여부 전체 Y N	

※ 반드시 위와 같이 조건값 선택 후 조회

※ 위의 확인방법2를 활용할 경우, 실시간 교육이수현황 조회 가능

Q7

### (교육대상) 교육대상자가 계속 변동됩니다. 왜 그런가요?

▶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, 교육대상자가 변동됩니다.

Case1) 교육정보시스템 미가입자였다가, 교육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할 경우(교육대상으로 유입)

Case2) 교육정보시스템↔행정정보 연계 불가자였지만, 추후 연계될 경우(교육대상으로 유입)

Case3) 지위승계로 인해 행정정보 재연계(교육대상자 변경) 등

Q8

### (집합교육) 관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교육생 입과 시, 연장대상자 명단에 있는 미이수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▶ 교육생이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하고 있는 경우, 입과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.

온라인교육 수강포기 후 입과가 가능하며, 수강포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– 방법1) 교육생이 직접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중인 온라인교육의 수강포기 버튼 클릭

– 방법2) 교육운영기관 담당자가 학습지원센터(☎1833-4265)에 전화하여 요청  
(단, 교육생도 온라인교육 수강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요청 가능)

Q9

### (집합교육) 집합교육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?

▶ '23년 교육운영지침에 의거 진행하시면 됩니다.

▶ 단, 교육 최소인원이 10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.

– (변경 전) 최소 20명 이상 → (변경 후) 최소 10인 이상(특별승인 제출 불필요)

– 단, 10인 미만 집합교육 진행 시 사전에 교육총괄기관으로 문의(☎02-2079-8474)

**Q10****(집합교육) 개설 시 교육기간 설정 및 정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**

- ▶ 교육기간 설정 : 집합교육 개설 시 교육기간은 가급적 2주 이내로 설정하며, 교육일이 지나야 정산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.
  - 교육기간 : 보수교육교재 학습·과제물작성 및 교육운영기관의 과제물 평가 기간
  - cf. 신청기간 : 교육생 모집 기간으로, 교육운영기관의 일정에 맞춰 설정
- ▶ 정산신청 기한 : '24.2.29.(목) 까지 (교육기간 종료 후 교육개설 불가)

**교육생****Q11****온라인교육을 수강할 경우, 교육교재를 준비해야 되나요?**

- ▶ 교육교재는 없어도 됩니다.
- ※ (참고) 집합교육 시에는 교육교재가 필요하며, 교재는 교육운영기관에서 준비

**Q12****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?**

- ▶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(단위: 시간, 원)

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비	
		집합	온라인
축산업 허가자 (가축사육업, 종축업·부화업·정액등처리업)	6	10,000	무료
가축사육업 등록자			
가축거래상인	4	8,000	

**Q13****미수료자가 '23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'24년 1~2월 중 이수할 경우,  
'24년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?**

- ▶ '23년에 수료해야하는 보수교육 허용기간을 '24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, '24년 보수교육은 축산법에 따라 정해진 보수교육기간 내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